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30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김태년 · 김한규 · 맹성규

이훈기 • 홍기원 • 황정아

김영배·박균택·염태영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를 "임금정책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제12조에 따른 임금정책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

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하여야한다.
-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 은 확정된다.

제10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금정책위원회의 설치) 근로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둔다.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심의 및 재심의"를 "심의·재심의 및 의결"로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연구 및 건의"를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를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로 한다.

- 1.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 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
- 3.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
- 4.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임명"을 "추천·임명"으로 한다.

③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천, 임명 또 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분) ① (생 략) 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 정책위원<u>회가</u>-----. 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제12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 조에 따른 임금정책위원회는 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 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 급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

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 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 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 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기)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 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 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 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 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 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 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 임금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 심의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 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u>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u> 는 아니 된다.

-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① <u>고용노동부장관은</u> 최 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 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u><신 설></u>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① <u>위원회는</u>
<u>.</u>
②
위원회
- <u>11 12 1</u>
_
제4장 임금정책위원회
제12조(임금정책위원회의 설치)
근로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
의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
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
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
<u>를 둔다.</u>
제13조(위원회의 기능)
1.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

<신 설>

<신 설>

<신 설>

-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 심의
-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 별 구분에 관한 심의
-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 8. ----임금정책 및 최저임 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신 설>

의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 의
- 3.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 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
- 4.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제 ·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u>5.</u> -----심의 재심 의 및 의결
- -----심의·의결
- <u>7.</u> ------연구
- 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 (현행과 같음)
 - ③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

(3)	\sim	(5)	(생	략)

⑥ 위원의 자격과 <u>임명</u>·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4</u>	~	<u>6</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기	가지	와	같음)		

<u>7</u>	 	 - <u>추천</u>	• 0	<u> 명</u> -